

## II

## 법률안 주요 내용



## 1 법률 적용 대상

## 가. 적용 대상기관

- 헌법기관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시·도 교육청,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
- **각급 학교**,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,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

## 나. 적용 대상자 :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

- **공직자등** : 국가·지방공무원, 공직유관단체·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,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,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
- **공직자등의 배우자**
- **공무수행사인** :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
  - ※ 공무수행사인의 유형(4개)
    -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
    -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
    -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
    - 심의·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
- **일반 국민** : 공직자등에게 **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** 민간인